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)”을 “(병의 진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병으로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은 1계급씩 진급시킬 수 있다.

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상등병 계급으로 전역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급선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전역일부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다.

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병의 진급권자는 병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3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. 단,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(절차)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형사사건”을 “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”으로 한다.

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

의 부분) 중 “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”을 “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(해병
대사령관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병의 진급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
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6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, 제33조,
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소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사
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
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) ①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 시킨다.	제32조(병의 진급) ① 병으로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 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은 1계 급씩 진급시킬 수 있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병의 특별진급) (생략)	제33조(병의 특별진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 나 상등병 계급으로 전역할 경 우 제36조에 따른 진급선발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전역일 부 병장으로 진 급시킬 수 있다.
제35조(병의 진급 선발 심사) 병 의 진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병진급 선발위원회를 두고 진급 선발 심사 또는 전형 을 하게 할 수 있다.	제35조(병의 진급 선발 심사) 병 의 진급권자는 병 진급선발위원 회의 심사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3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. 단,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(절차)를 생략할 수 있다.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 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	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 유) ① ----- -----

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. 1. <u>형사사건</u>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(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) 2. 3. (생략) ② ③ (생략) 제37조(병의 진급권자) 병의 진급은 <u>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</u>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시행한다. <u><신설></u> 제56조(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) ① ~ ③ (생략)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첩을 둔 사람</u> 5. (생략)	----- -----. 1. <u>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</u>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 제37조(병의 진급권자) ① ----- -- <u>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)</u>----- -----. ② <u>병의 진급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제56조(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-	---